

'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심사보고서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'93. 7. 7

다. 상정일자 : '93. 7. 21

라. 의결일자 : '93. 7. 21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

나. 내 용 : '93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, 지방의회의 보증채무를 승인 요청한 사안으로

— 목적은 도시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하며

— 지원방법으로

· 융자금 총액은 5억 3천만원, 제원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, 융자대상은 부천시 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 1천만원 이하인 전세입자로, 가 구당 지원액은 500만원 한도내이며, 대출금리는 년리 3%이며, 상환조건은 2 년이내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.

— 자금배분은 구별 법정 영세민 가구수를 기준하여 배정하여
원미구 2억 5천만원
소사구 1억 6천만원
오정구 1억 2천만원임.

— 지급보증대상자는 원미구 심곡1동 73번지 장순진 외 123명

3. 질의답변 요지

없 음

4. 찬성토론

관내 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.

5. 반대토론

없 음

6. 소수의견

수혜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함.

□ 심사결과

원안가결

'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

의안번호	185
의 결	제21회
년 원 일	(93. 7. 23)

제출년월일 : 1993. 7. 6

제 안 자 : 부천시장

1. 제안이유

'93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갚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.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2. 주요골자

'93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함.

가. 자 금 명 :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

나. 지급보증금액 : 530백만원

다. 지급보증대상자 :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73번지 장순진 외 123명

라. 융 자 금 지 급 : 한국주택은행 (부천지점, 역곡지점)

마. 상 환 방 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

바. 이 율 : 년리 3%

사. 지급보증기간 : 2년간 (단,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3. 제안본문

제목 : '93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

가. 목 적

- 도시 영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함.

나. 지원방법

- 융자지원규모 : 총 530백만원 (부천시 배정액)

- '92이월액 : 30백만원

- '93배정액 : 500백만원

(※제원 : 건설부 국민주택기금)

- 융자대상

-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

- 전세금 1,000만원 이하 (융자금 포함 1,500만원 이하)인 전세입자

- 가구당 지원액 : 500만원 한도내

- 대출금리 : 년리 3% (본인부담)

○ 상환조건

- 2년 이내 일시상환 (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- 자금관리 :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

다. 자금배분

- 배분기준 : 해당지역 (구, 동) 법정 영세민 가구수를 기준으로 배정
- 구별 배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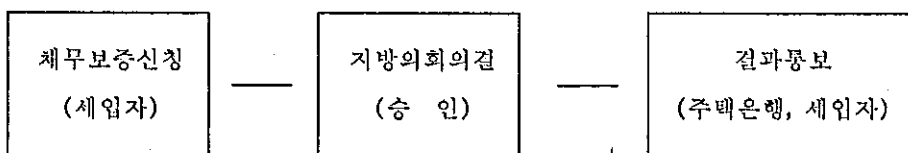
구 분	생보자 가구	비 율(%)	배 정 액
계	2,453	100	530백만원
원 미 구	1,308	53	250백만원
소 사 구	821	33	160백만원
오 정 구	324	14	120백만원

라. 용자실시 방법

- 용자업무 취급기관 : 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)
- 시행시기
 - 신청접수 : '93. 6. 14 ~ 6. 23(각동)
 - 개별실태조사 : '93. 6. 15 ~ 6. 23(각동)
 -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: '93. 6. 24(각구청)
 - 지방의회 의결 : 보증채무 승인행위 승인
 - 대상자 통보 : 의회 의결후
 - 용자실시 : '92. 7. 20 ~ 9. 20
- 용자계약 체결
 - 계약 당사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
 - 보증인 :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
 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

마. 채무이행 보증절차

- 근거규정 : 지방채정법 시행령 제21조
- 보증절차



- 채무보증 내용

- 전세자금 융자액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걸손보존 문제가 발생된 경우로서
- 주택은행의 독촉장 반부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후
-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걸손을 보전토록 하고
-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

바. 기타사항

-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융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,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
-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.

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심사보고서

□ 심사결과

1. 심사입점

- 가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'93. 7. 7
- 다. 상징일자 : '93. 7. 21
- 라. 의견일자 : '93. 7. 21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설명자 : 관리과장

나. 내 용 :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165만평중 부천시가 시행하는 55만 1천평의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5,500억원으로 현재 기채 1,408억원과 택지 매각 대금 2,732억원등 총 4,1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사업에 4,00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재원이 1,330억원으로, '93년도 가용재원 497억원을 제외하면 833억원이 부족한 사향으로

- '93년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

— 중동대로 보상비 등 499억원임.

-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운영자금의 확보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으로

○ 운영자금이 확보 안 된 경우 공사를 중단하거나 인기해야 하며, 현재 입주민의 삶편이 장기화될 것이므로, 부득이 은행기채 350억원을 차입하여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코자 함.